

2023년도 「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」
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위탁 용역

과 업 지 시 서

2023. 2.



여수시도시관리공단
YEOSU URBAN MANAGEMENT CORPORATION

과업지시서

1. 용역명 :

2023년도 「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」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위탁용역

2. 목 적 :

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 중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(자가측정) 및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른 대기자가측정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소각시설 운영업무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함.

3. 용역범위

1) 측정항목 : 대기오염물질 32종

- TMS 전송항목(5항목): 일산화탄소, 염화수소,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, 먼지
- TMS 미전송항목(27항목): 황화수소(H₂S), 암모니아(NH₃), 이황화탄소(CS₂), 시안화수소(HCN), 포름알데히드(HCOH), 불소화합물(HF), 카드뮴화합물(Cd), 납화합물(Pb), 크롬화합물(Cr), 구리화합물(Cu), 니켈화합물(Ni), 브롬화합물(Br), 벤젠(C₆H₆), 페놀화합물(C₆H₅OH), 수은화합물(Hg), 비소화합물(As), 아연화합물(Zn), 디클로로메탄, 트리클로로에틸렌, 부타디엔, 아크릴로니트릴, 1,2-디클로로로에탄, 클로로포름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스틸렌, 에틸벤젠, 사염화탄소

2) 측정방법 :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 시료 채취 및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 항목의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.

3) 측정지점 : 소각로 굴뚝 지상 12m 지점

4) 측정주기(횟수) : 주기는 항목별 아래와 같으나 횟수는 소각장 가동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정지 기간에는 미 실시.

- TMS 전송항목(5항목): 분기별 1회
- TMS 미전송항목(27항목): 1회/2주

※ 측정주기 외 발주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측정에 응해야 함. 이 때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.

5) 측정시기 : 주간(소각로 정상 가동할 때)

6) 보고서제출 : 시료 채취 후 20일 이내 분석 및 성적서 제출

4. 용역기간 : 계약체결일 ~ 2023년 12월 31일

5. 용역연장 :

용역 기간 종료 시 바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차기 계약상대자 선정 시까지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단, 3조 1항의 측정항목은 변경될 수 있다.

6. 과업의 진행

- 1)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며, 착수 시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측정 분석 결과는 지정된 기일 내 보고하되, 배출허용기준 초과 또는 측정값의 이상 변화를 확인하는 즉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에 우선하여 유선 통보하고, 이때 발생 원인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공한다.
- 3) 국가 또는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,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관련기관 등의 보완 및 자료요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본 용역으로 인하여 발주처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계약자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.
- 5) 본 용역을 수행하는 현장 대리인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불성실 또는 부적절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- 6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담당자와 협의 처리하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다.

7. 보안사항

- 1)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업 수행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는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기밀 누설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- 2) 용역 수행자는 과업 성과를 발주처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.
- 3) 보안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

8. 안전관리

본 용역 과업의 수행에 종사하는 계약자의 인원과 관련한 안전관리와 재해의 처리, 안전사고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보상 등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 다만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9. 측정결과 제출

- 1) 측정 결과는 시료 채취 후 20일 이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여 제출한다.
- 2) 측정 결과 보고서는 계약자의 양식으로 하되 반드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① 분석 의뢰인
 - ② 분석 의뢰 내용
 - ③ 시료 채취 일시, 장소 및 방법
 - ④ 항목별 분석 결과(대기 관련법의 배출허용기준 및 분석 방법 포함)
 - ⑤ 분석 기간 및 종료일
 - ⑥ 시료 채취 및 분석 책임자
 - ⑦ 그 외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

10. 제반사항 및 비용의 청구 지급

- 1) 본 용역의 비용은 매월 단위로 지급한다.
- 2) 용역비용 청구는 발주처의 지정 일자 이내에 문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해당 월의 비용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본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기간 중에는 유류비, 물가 변동, 인건비, 장비의 증감 등의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단가 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.

- 4) 계약상대자의 원인과 책임으로 인하여 본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는 계약 해지에 대한 그 어떠한 비용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.

11. 계약의 해지

- 1) 본 과업지시서의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
- 2) 본 과업 수행 중에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관련 법규위반 등 발주처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
- 3) 과업 수행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, 양도 또는 사업자 간에 이면 공동 수행 등 본 과업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
- 4) 과업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, 발주처의 시설 운영/관리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
- 5) 용역수행 중 부도, 파산 또는 위법에 따른 행정조치, 과태료 등을 받거나, 발주처의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
- 6) 과업지시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
- 7) 본 용역을 수행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주처에 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
- 8) 상기, 2)~7) 항에 해당하면 발주처는 계약자와의 계약 해지 외에도 발주처에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12. 기타사항

- 1) 계약상대자는 환경 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만약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주처에 피해를 주면 계약 해지 등의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2)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시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3)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수

행하여야 한다.

- 4)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민원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험 분석한다.
- 5)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측정 지연으로 인하여 소각장 운영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타인에게 대항토록 하거나,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이때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.